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56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5일
발 의 자 :김재형 의원(1명)
찬 성 자 :권영희, 김인제, 김제리, 박순규, 송도호, 송아량, 오중석, 전석기, 홍성룡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이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청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청년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울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청년의 날) (생 략)	제22조의2(청년의 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문 서 번 호	2021073000000010

미 첨 부 사 유 서 (2 호)

요 청 인 : 김재형 의원	담 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
접 수 일 : 2021.07.30	
회 신 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2에서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○ 조례안 제22조2에서 청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법인·단체 등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고, 지원 규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원상
분석관(주무관)	공도연
	☏ 02-2180-7952
	e-mail : ehdus0@seoul.go.kr